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권한대행
국무위원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
최 상 목 인

2025년 1월 31일

국무총리 직무대행
국무위원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
최 상 목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

김 완 섭

● 대통령령 제35239호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- 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
2.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
3.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4. 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

-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3항”을 “법 제4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(이하 “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2. 행정안전부
3. 농림축산식품부
4. 산업통상자원부

- 5. 환경부
- 6. 국토교통부
- 7. 해양수산부
- 8. 원자력안전위원회

- ③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를 대표하고,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1조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1조제1항 본문”으로 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)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, 정보통신, 교통수송,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”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.

제1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를 설치하고,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·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·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기상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

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230호, 2024. 2. 6. 공포, 2025. 2. 7. 시행)됨에 따라,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을 기상청장으로 정하는 등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기상청장에게 지진 정보전달시스템 간 연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에너지·정보통신·교통수송·보건의료·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하며, 지진현장경보의 발령기준을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